

2018년 6월 1일

csf@kiep.go.kr

中 자유무역시험구 일부 조치, 전국으로 확대



- 지난 5월 23일 국무원은 기존 자유무역시험구 내 시행되던 서비스 투자 규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함.¹
 - 중국정부는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의 시험대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기준 총 12개 지역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었음.
 - 12개 지역은 각각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푸젠(福建), 톈진(天津),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충칭(重庆),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산시(陕西), 하이난(海南)임.
 - 2018년 4월 지정된 하이난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일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음.
- 이번 조치 중 해운 및 선박 관련 서비스와 투자관리의 규제완화가 두드러지며, 이는 상품무역 활성화와 자국의 산업육성을 위함임.
 - 선박운송, 선박관리 등 해운 및 선박 관련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향후 외국인투자자의 과반 지분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²
 -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장개방의 의미도 있으나, 해운 및 선박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항만기능의 제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임.
 - 상무부(商务部)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에 의하면 해운 및 선박은 상품무역의 주요 수단으로 무역편리화와 연관됨.³
 - 또한 그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항 조성에 있어 해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 연내에 선박 설계·제조·수리 관련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폐지할 계획임.

1 国务院(2018. 5. 23), 「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四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2 해당 투자지분 규제 완화는 2018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임시조정 정책에서 11개 FTZ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조치로 현행의 FTZ 네거티브 리스트와 연계되지 않음. 참고로 현행의 FTZ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5개 분야, 9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3 夏旭田(2018. 5. 24), 「30项自贸区改革红利再推广: 力促船舶、保税油等行业开放」, 21世纪经济报道.

- 중국 국내기업 선박금융업의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하였고, 바이오의약의 행정허가를 간소화하여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도모
 - 외국선박의 금융 공급자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였고, 이는 세계 선박금융업 시장 중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임.⁴

표 1. 2018년 5월 이후 전국 확대될 FTZ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현행 FTZ 조치
서비스 개방	법률	중국 국내기업과 홍콩·마카오 간의 파트너십 법률사무소의 설립 범위 확대 광둥성 FTZ 내에서만 허용
	운송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항만운송(货物装卸, 集装箱场站和堆场业务) 확대 개방 11개 FTZ 내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11개 FTZ 내 외국인 투자지분 51% 허용
지역 및 국제 협안	운송	선박금융업 관련 중국 국내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저장 FTZ)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 자격제한 완화
		선박증서 단일화 및 발급 편의 증진 국제선박 등록제 간소화
	바이오 의약	저위험 바이오의약품 행정허가 간소화 (상하이 FTZ)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

자료 : 国务院(2018. 5. 23), 「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四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夏旭田(2018. 5. 24), 「30项自贸区改革红利再推广: 力促船舶、保税油等行业开放」, 21世纪经济报道; 国务院(2017. 1. 9),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决定」.

- 중국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을 진행 중이고, 자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영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일부 서비스 영역의 경우 양자간 무역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홍콩 CEPA의 일부 조치를 자유무역 시험구 내 시험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
 - 중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뿐 아니라 자국 산업육성 및 발전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서비스업 개방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향후 해운 및 선박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연내 선박의 제조·수리 관련 외국인투자 지분제한도 폐지될 예정이며, 우리기업의 투자 시 개방조치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함. **CSF**

(작성자 : KIEP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김홍원 전문연구원)

⁴ 2016년 중국 항구의 물동량은 싱가포르의 약 20배에 달하나, 중국의 선박금융 거래량(842만 톤)은 싱가포르의 선박금융 거래량(4,860만 톤)의 17.3% 불과함. 자료: 夏旭田 (2018. 5. 24) 참고하여 계산.